

의안번호	2216164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6.1.26.
추 계 번호	26B028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2 신설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6조의2 신설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 운영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이 적용될 경우 세수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은 조세감면 대상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등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요건 및 절차를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기준이 관련 세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감면 적용 대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의 규모, 해당 기업등의 부과세액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세수감소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확산지원 사례는 [참고자료]와 같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사업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 사업 개요

- (목적)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의 국내외 홍보 및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정책 인지도 향상
- * 스마트시티 성과 확산을 위해 '20년부터 국내외 확산사업 지속 추진
-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성과조사, 종합포털 및 홍보채널 운영·관리, 한국형 스마트도시 국내외 홍보·확산 등

□ '24년 추진현황

-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및 홍보채널 운영
- 스마트도시 혁신 파트너십 구축(기업 매칭, 기술공유 세미나,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스마트도시 산업 특수분류 개발)
- 한국형 스마트도시 국내외 홍보·확산(SCEWC 한국관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

□ 홍보현황

- 종합포털, 뉴스레터, SCEWC(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엑스포) 한국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스마트시티 뉴스레터



SCEWC 한국관(24.11.5~11.7) 5개 기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포스코홀딩스 등 22개 기업 참가(497m²)

[참고자료 2] 국가시범도시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 (경과) 혁신기술이 집약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코자, 백지상태 부지인 세종 5-1생,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사업지 선정('18.1)
 - 총괄계획가(MP)를 선임하여 각 국가시범도시의 비전과 특화 서비스를 담은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을 마련
 -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19.12)해 시범도시에 적용할 新기술·서비스를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조성계획을 확정(세종 '21.9, 부산 '22.11)
 - (체계) 공공이 정책과 예산 지원, 부지 조성 등을 담당하면서도, 민간의 자율·혁신성 접목을 위한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체계 도입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 + 관할 지자체(세종시, 부산시) + 공기업(LH, K-water)" 간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출자를 통해 SPC 설립
 - SPC는 선도지구(세종 10만평, 부산 5.4만평) 부지 개발수익(건축·분양)을 사업지에 전액 재투자하여 스마트 서비스 구축·운영 재원으로 활용
 - 정부는 스마트 서비스의 선행 구축 및 규제특례 실증 등을 지원
- (컨셉) 세종은 보행자 친화적인 모빌리티 특화도시(공유차 기반)를 지향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한 용도혼합용지(주거·상업 복합) 등 도입
 - 부산은 친수도시와 로봇 특화도시를 핵심 컨셉으로 하고, 수열·수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를 지향

<국가시범도시 조감도 및 특화계획>

세종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	부산 국가시범도시(에코델타시티)
	
◦ (사업규모) 2.74km²(83만평) / 24천명 / 약 3.1조원 ◦ (대표서비스) 스마트교통(자율차, 통합 MaaS) ◦ (특화계획) 공유차 기반구역, 용도혼합 용지	◦ (사업규모) 2.8km²(84만평) / 8.5천명 / 약 5.6조원 ◦ (대표서비스) 무인로봇(경비·택배 등), 신재생에너지 ◦ (특화계획) 친환경 수변도시, 제로에너지 등